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3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고용진·김병욱·신동근

안규백 · 안민석 · 윤관석

윤후덕 • 이용우 • 이정문

전용기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종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 분야의 다른 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현행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	력) ①
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	
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u><</u> 후단 삭제>
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④ <u>제1항 또</u>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	<u>는 제2항에</u>
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	
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u>효력을 갖는다.</u>